

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

[담당재판부: 제 민사부(단독)]

사 건 20 가단(합, 소)
원 고
피 고

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(또는 피고)는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을 합니다.

- 다음 -

1. 소송대리허가신청

가.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명: (주민등록번호: -)

주소: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:

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:

나. 신청이유(해당란에 ☒ 해 주시기 바랍니다)

☐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

☐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·보조하여 왔음

2. 위임 사항

가. 반소·참가·강제집행·가압류·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

나. 변제의 영수

다. 반소의 제기

라. 소의 취하, 화해, 청구의 포기·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

마.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

바. 대리인의 선임

사. 기타(특정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)

첨부서류

- | | |
|------------|----|
| 1. 재직증명서 | 1통 |
| 2. 가족관계증명서 | 1통 |
| 3. 주민등록 등본 | 1통 |

20 . . .

신청인 겸 위임인 원고(또는 피고)

서명 또는 날인

연락 가능한 전화번호:

법원 귀중

◇ 유의 사항 ◇

1.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그 밖에 팩스 번호,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.
2.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소송위임에 따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3. 다만, 단독판사가 심리·재판하는 사건 중 수표금·약속어음금, 은행 등이 원고인 대여금·구상금·보증금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과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사건에서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4. 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 등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(수사기관 고소장 등)를 첨부하여,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